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보건의료담당
발신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위원장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의	사회정책팀(남은경 팀장/ 02-3673-2145)
일자	2017. 1. 12(목)
제목	[보도자료] 실태고발 시리즈_③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문제 (총 8매)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_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

실태고발 기획

- ①월 300만원 연금소득에 보험료 “0”원_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
- ②저소득 장기체납 120만 가구의 현실_지역가입자 부과 문제
- ③연 4700만원 금융소득에 보험료 “0”원_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문제**

직장가입자는 연 7000만원 ‘금융·임대’소득에 보험료 ‘0원’

- 근로 외 연소득 2천만원 초과 소득월액 보험료 내지 않는 직장가입자 41.5만명 -
-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연 4700만원 금융소득 예상되나, 소득월액 보험료는 ‘0원’ -
- 유명무실한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7200만원 초과) 폐지해야 -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 이외의 금융·임대·기타 소득이 있는 근로자 222만 명 중 현행법상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인 7200만원을 초과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원은 3.8만명(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외 소득이 연 7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6,593명 역시 소득월액 보험료는 내지 않았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시 소득역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불공평한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표1>직장가입자 근로 외 소득 보험료 부과 현황

근로 외 소득 규모	인원(명)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현황
소 계	2,222,618	미부과
1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1,514,426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255,004	
2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408,834	
7천만원 초과~7천2백만원 이하	6,593	
7천2백만원 초과	37,761	부과

자료 : 국회(건보공단 제공). 소득 구간별 분포자료 참조. (2016년 6월 말 기준)

지역가입자는 성·연령·자동차 및 주택과 종합소득(금융, 사업, 연금, 기타)에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주로 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보수월액¹⁾)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에는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 보험료를 부과(소득월액²)하는데, 기준이 높아 사실상 보

1) 근로소득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혐료 면제혜택을 주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

경실련이 고위공직자의 건강보험료를 추정한 결과, 조사 공직자 절반 이상(20명)이 근로소득 외 연간 5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만, 모두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2>에 나타난 것처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근로소득 외에 27억 상당의 예금 및 해외채권을 보유. 연 약 4700만원의 이자소득이 추정된다. 그러나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7200만원) 미만이므로 보험료는 미부과된다. 이원종 전 청와대비서실장은 강남구 소재 상가와 송파구 소재 근린생활시설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소득과 예금 이자소득이 약 4,000만원으로 추정되지만 소득월액 보험료 면제대상이다.

<표2> 고위공직자 근로소득 외 소득 추정 상위 5위 건강보험료 부과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건강보험료			
부서	이름	직위	이자/임대소득	면제	근로소득	재산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16,817	면제 (연 합산 7,200만원 이하)	부과 (근로소득의 3.26%)	미부과
	이원종	(전)비서실장	40,360			
	우병우	(전)민정수석비서관	47,012			
정 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7,682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17,999			

자료 : 2016년 3월, 공직자 재산 및 소득 공개 기준, 전체명단 분석자료 참조

2016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봉은 1,512만원(시급 6,030원, 주 40시간 기준)이며, 이들의 월 보험료는 41,000원(소득의 3.26%)이다.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의 월 추정 보험료는 36.9만원(연소득은 1억8천2백만원)으로 소득의 2.4%이다. 건강보험 부과에서 소득역진현상이 나타난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봉보다 높은 불로소득에 보험료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현행 가입자 구분에 따른 차별적 건보부과체계는 고소득자의 보험료 면제(피부양자 무임승차와 소득월액 보험료 면제) 부분을 소득 낮은 지역가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셈이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면, 송파세모녀와 같은 저소득 가구에는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저소득층들에게 고소득자의 경감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떠넘겨서는 안 된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저소득층에는 복지안전망이 아닌 경제적 부담의 굴레가 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청와대가 중단한 소득중심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모아야 한다.<끝>

#첨부1. 근로소득외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실태 분석(4매)

#첨부2. 고위공직자 재산 및 소득 공개 현황 표(1매)

#첨부3. 현행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과 부과방식(1매)

2) 근로소득 이외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

분석 결과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하고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70만 명이며, 매월 2백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연금수급자가 145천 명이다. 반면 송파세모녀와 같이 소득이 없거나 낮아 보험료를 장기 연체한 지역가입자는 180만 명에 이른다.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송파세모녀처럼 소득이 없거나 낮은 지역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고소득자의 보험료는 감면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개선이 요구된다.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 뿐 만 아니라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근로 외 소득에 보험료를 면제 혜택을 주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높다. 지역가입자는 성·연령·자동차 및 주택과 종합소득(금융, 사업, 연금, 기타)에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주로 근로소득에 보수월액³⁾ 보험료를 부과한다.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에는 연간 합산 7,200만원을 초과해야 소득월액⁴⁾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기준이 높아 사실상 보험료 면제혜택을 주고 있다.

□ 7000만원 소득에 보험료는 “0원”

<표3>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 현황

2016년 6월 말 기준

보험료 부과 소득	가입자 수(명)	부과 보험료
합 계	16,032,473(100%)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13,809,855(86%)	보수월액
근로 외 소득 있는 근로자	2,222,618(14%)	
소 계	2,222,618(14%)	
1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1,514,426	보수월액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255,004	보수월액
2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155,849	보수월액
3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97,271	보수월액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67,487	보수월액
5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50,352	보수월액
6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37,875	보수월액
7천만원 초과~7천2백만원 이하	6,593	보수월액
7천2백만원 초과	37,761	보수월액+소득월액

*국회(건보공단 제공)

<표3>과 같이 국회(건보공단 제공)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6월 말 기준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근로자는 모두 1600만 여명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1389만 명(86%)이고 근로소득 이외에 금융소득 등 기타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222.2만 명

3) 근로소득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4) 근로소득 이외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

으로 나타났다. 근로 외 소득이 7200만원 이하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면제된 직장가입자는 218.4만 명이며, 7000만원 초과자도 6,593명으로 조사됐다.

□ 경실련, 고위공직자 건강보험료 추정

- 대통령, 청와대 수석 및 장관 이상 37명 대상/공직자 재산 및 소득 공개 현황

근로자의 2천만원 연봉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고액 예금자산이나 주식에서 실현된 이자·배당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부과체계인가? 경실련은 유명무실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사례조사를 위해 정부 고위공직자(청와대 수석 및 정부 장관 이상)의 공개된 재산과 소득을 근거로 보험료를 추정했다.

2016년 10월 기준⁵⁾, 청와대 및 정부의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37명의 공개된 재산과 소득을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추정했다. 공직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근로소득(보수월액)과 근로 이외 소득(소득월액)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정률(3.26%)로 부과되고, 소득월액 보험료는 공개된 자산(부동산 및 예금)을 근거로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을 추정해 7200만을 초과하는지 조사했다. 임대소득은 부동산 사이트에서 시세를 조사했고, 이자소득은 현재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1.7%)를 적용해 산출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 보수월액(근로소득*3.26%) + **소득월액(7200만원 초과 종합소득*3.26%)**

□ 근로 외 소득 발생 추정되나 소득월액 보험료 '0원'

-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연 4700만원 금융소득 추정, 보험료 '0원'

○ 공개된 재산/소득 기준, 조사대상 공직자 소득월액 보험료는 모두 면제 예상됨. 조사 공직자 절반 이상(20명)이 연간 500만원 이상 종합소득이 발생.

- <표4>에 나타난 것처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근로소득 외에 27억 상당의 예금 및 해외채권을 보유. 정기예금 이자율(해외국채 이자율 1.7%)을 적용해 이자소득을 추정하면 약 4700만원 발생.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7200만원) 미만이므로 보험료 미부과 예상.

- 이원종 전 청와대비서실장은 본인 명의의 강남구 도곡동 소재 상가와 송파구 소재 근린생활시설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소득과 4400만원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 임대소득 (부동산 거래 사이트를 통해 해당 지역 상가임대료 추정, 3300만원)과 이자소득 (700만원) 합계액이 약 4000만원으로 추정됨. 소득월액 보험료 면제 예상.

- 박근혜대통령과 정진엽복지부장관,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도 연간 약 17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지만, 소득월액 보험료 면제 대상임.

<표4> 경실련 고위공직자 건강보험료 부과 추정(2016.10 공직자 대상)

5) 교체된 공직자는 (전)직으로 표기함. 이준식장관은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제외함.

(2016년 3월, 공직자 재산 및 소득 공개 기준)(단위 : 천 원)

부서	구분		건강보험료			
	이름	직위	이자/임대소득	근로소득	재산	
청와대 (12)	박근혜	대통령	16,817	면제 (연 합산 7,200만원 이하)	부과 (근로소득의 3.26%)	미부과
	이원종	(전)비서실장	40,360			
	안종범	(전)정책조정수석비서관	2,817			
	현기환	정무수석비서관	10,641			
	우병우	(전)민정수석비서관	47,012			
	김규현	외교안보수석비서관	7,200			
	김성우	홍보수석비서관	2,849			
	강석훈	경제수석비서관	7,522			
	현대원	미래전략수석비서관	1,584			
	김용승	교육문화수석비서관	2,630			
	김현숙	고용복지수석비서관	8,946			
	정진철	인사수석비서관	5,789			
정 부 (22)	황교안	국무총리	9,671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	1,549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3,376			
	제정부	법제처장	7,162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239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368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2,748			
	이준식	교육부장관	미확인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7,682			
	윤병세	외교부장관	12,580			
	홍용표	통일부장관	1,317			
	김현웅	법무부장관	737			
	한민구	국방부장관	8,857			
	조운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2,935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89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430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17,999			
	조경규	환경부장관	5,597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5,193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7,104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7,727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2,190				
기관 (2)	성상철	건강보험공단이사장	5,605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6,173			

□ 유명무실한 소득월액 보험료 기준 개선해야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와 비교 시 소득역진적, 형평성 결여 -

고위공직자의 보험료 추정결과에 의하면, 직장가입자에게는 근로소득 외에 고액 자산에서 발생하는 임대/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감면해 준다. 이는 근로소득이 소득의 전부인 직장가입자와 비교하면 소득역진적이다. 2016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봉은 1,512만원(시급 6,030원, 주 40시간 기준)이며, 이들의 월 보험료는 41,000원(소득의 3.26%)이다.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의 월 추정 보험료는 36.9만원(연소득은 1억8천2백만원)으로 소득의 2.4%이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봉에 육박하는 불로소득에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면제되는 이유는 연간 7천 2백만 원 초과 시에만 부과하는 느슨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 때문이다. 특히 이자소득의 경우 2천만원 미만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지 않아 보험료 산정 시 소득자료에서 누락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난해 박근혜대통령의 예금 이자소득이 1천 7백만원 발생했다면 2천만원 미만이므로 보험료 부과 산정 소득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할 일은 고소득자의 소득파악은 방치한 채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와 근로소득이 전부인 직장가입자에만 엄격하게 부과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 저소득자에 보험료 전가하는 건보부과체계 조속히 개편하라.

현행 건보부과체계는 고소득자의 보험료 ‘무임승차(피부양자)’와 ‘저임승차(종합소득분 감면)’분을 소득 낮은 지역가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면, 송파세모녀와 같은 저소득 가구에는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다. 불공평한 부과체계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저소득층에는 복지안전망이 아닌 경제적 부담의 굴레가 되고 있으므로 이제는 정상화해야 한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우선 보호하고 고려해야할 대상은 송파세모녀와 최저임금 근로자와 같은 서민과 저소득층이다. 서민들은 낮은 소득과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다. 이들에게 고소득자의 경감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떠넘겨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지체없이 청와대가 중단한 건강보험부과체계 정상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

<끝>

#첨부2. 고위공직자 재산 및 소득 공개 현황 표(1매)

<첨부>고위공직자 재산 및 소득 공개 현황 표(2016년 3월 공개자료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재산					근로소득	재산 실현 소득 (추정)
부서	이름	직위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증권	연봉/직급 보조비	임대/이자 소득
청와대 (12)	박근혜	대통령	0	2,530,000	0	989,244	0	250,418	16,817
	이원종	(전)비서실장	0	4,373,702	1	441,569	20,367	135,748	40,360
	안종범	(전)정책조정수석비서관	9,479	604,800	1	165,686	1,262	135,748	2,817
	현기환	(전)정무수석비서관	4,524	655,000	0	625,968		135,748	10,641
	우병우	(전)민정수석비서관	0	1,495,654	0	2,520,037	245,413	135,748	47,012
	김규현	외교안보수석비서관	0	501,380	1	423,556		135,748	7,200
	김성우	(전)홍보수석비서관	0	1,083,601	1	167,590		135,748	2,849
	강석훈	경제수석비서관	0	1,370,000	0	442,469		135,748	7,522
	현대원	미래전략수석비서관	0	1,054,000	1	93,169		135,748	1,584
	김용승	교육문화수석비서관	0	1,105,785	1	154,683		135,748	2,630
	김현숙	고용복지수석비서관	0	300,000	1	526,228		135,748	8,946
	정진철	인사수석비서관		320,000	1	340,516		135,748	5,789
정부 (22)	황교안	국무총리	0	880,000	2	568,869		185,006	9,671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	0	197,000	0	91,094	30	135,748	1,549
	김동국	인사혁신처장	86,976	751,300	1	198,571		132,923	3,376
	제정부	법제처장	0	344,000	2	421,322		132,923	7,162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183,973	-	1	14,085		132,923	239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0	1,504,000	2	139,320		132,923	2,368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478,461	1,060,000	0	161,636		140,432	2,748
	이준식	교육부장관						140,432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42,450	840,000	2	1,040,142		135,748	17,682
	윤병세	외교부장관	0	743,500	1	739,990		135,748	12,580
	홍용표	통일부장관	0	502,000	2	77,478		135,748	1,317
	김현웅	(전)법무부장관	0	324,000	0	43,327		135,748	737
	한민구	국방부장관	0	760,000	0	520,971		135,748	8,857
	조운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51,652	1,650,000	0	760,874		135,748	12,935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4,263	898,000	1	34,626		135,748	589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88,000	1	25,288		135,748	430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0	396,000	1	1,058,786		135,748	17,999
	조경규	환경복지부장관	0	1,100,000	1	329,249		135,748	5,597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0	226,000	1	305,443		135,748	5,193
	김희정	(전)여성가족부장관	0	531,500	0	417,889		135,748	7,104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1,245	575,272	2	454,502		135,748	7,727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0	775,000	2	128,826		135,748	2,190
기관 (2)	성상철	건강보험공단이사장	381,641	2,824,078	1	329,679		128,783	5,605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152,009	1,184,000	2	363,127		128,783	6,173

#첨부3. 현행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과 부과방식

□ 가입자 현황

2016년 6월 현재, 건강보험가입자는 총 5062만명이며, 이 중 지역가입자는 1398만명(28%)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전체 72%인 3663만명이며, 이 중 41%인 2천만명이 피부양자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단위 천명, 천세대)

가입자 구분		비율(%)	인구수	세대수
계		100%	50,622	23,577
지역	500만원 이하	19%	9,834	5,739
	500만원 초과	8%	4,154	1,773
	소계	28%	13,988	7,512
직장	세대주	32%	16,065	16,065
	피부양자	41%	20,569	
	소계	72%	36,634	16,065

*건강보험공단 자료 제공_2016년 6월말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현행 건강보험료는 아래 표와 같이 가입자를 4개 자격으로 구분하고 보험료 부과요소와 기준을 제각각 적용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과 경제활동 점수를 소득으로 환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낮으면 소득과약이 안된다고 간주해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는 보험료 부과요소를 중복(자동차, 재산 등) 적용합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정률(3.26%)로 부과하고, 근로 이외 종합소득 합산액이 7200만 원 이하이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아래 자격기준을 충족하면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가입자별 보험료 부과요소>

가입자 구분	성.연령	자동차	재산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지역	500만원* 이하	○	○(중복)	○	○	○	○
지역	500만원 초과	x	○	○	○	○	○
직장	근로자	x	x	x	△(합계 연 7,200만원 초과 시 부과)		○
직장	피부양자**	x	x	△	△	△	△

*500만원 : 연소득 기준

**피부양자 선정 기준 : 배당·이자소득 4천만원 이하 or 연금소득 4천만원 이하 or 기타·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 or 재산 9억원 이하 or 사업자등록 or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자료 재정리>

http://minwon.nhis.or.kr/menu/retrieveMenuSet.xx?menuId=MENU_WBMAA0202